# 의정활동보고서

제318회 임시회(2020. 8. 26 ~ 9. 8)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상생과 협치의 원칙으로 활발히 이끌어 주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반기 의회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마음으로 3백만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또다시 전국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노력해 주신 의료기관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엇보다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경북은 지금의 위기상황 또한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이전,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를 비롯한 국비확보 등의 현안사업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도민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앞으로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학생들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체계를 점검하시고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의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가, 더 시급한 부분은 없는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각 상임위별로 도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 차 례

Ⅰ. 개 황 ··· 11

Ⅱ. 의사일정 ··· 13

Ⅲ. 의안처리 ··· 22

Ⅳ. 민원처리 ··· 23

Ⅴ. 본회의 보고사항 ··· 25

Ⅵ.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9

-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29
- □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 40
- □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51

Ⅶ. 5분 자유발언 ···································································· 61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61

□ 박영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64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67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71

□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 76

□ 박차양 의원(농수산위원회) ············································· 80

# 부　　　록

□ 조　　례　　안(20건) ································· 85

□ 예　　산　　안( 1건) ································· 173

□ 동　　의　　안( 2건) ································· 177

□ 결　　의　　안( 1건) ································· 187

#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는 2020년 8월 26일 13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 8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15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3회의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6일(수) 오전 13시30분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한 후,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 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여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도민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마음으로 3백만 도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19회 임시회로 2020년 10월 6일 오전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 Ⅱ. 의사일정

##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20년 8월 26일(수) 13:30

##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8일(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30회)

○ 위원회

(단위 : 회)

| 구 분 | 계 |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 | 특 위 | |
|---|---|---|---|---|---|---|---|---|---|---|
| | | | | | | | | | 예결 | 기타 |
| 금 회 | 15 | 1 | 3 | 2 | 1 | 2 | 2 | 1 | 2 | 1 |
| 누 계 | 680 | 57 | 87 | 82 | 70 | 62 | 64 | 73 | 93 | 92 |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 --- | --- |
| 8. 26(수)<br>13:4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br>ㅇ 2020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br>ㅇ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br>•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br>•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br>•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br>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br>ㅇ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br>ㅇ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br>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ㅇ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br>•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병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곽경호) 인사<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종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정근수) 인사<br>ㅇ 휴회의 건 | |
| 9. 8(화)<br>11:00<br>(제2차) | ▢ 안건처리<br>ㅇ 5분 자유발언 (박태춘·박영환·이종열·김상조·정세현·박차양 의원)<br>ㅇ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br>ㅇ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br>ㅇ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9. 8(화)<br>11:00<br>(제2차) | ㅇ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br>ㅇ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br>ㅇ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br>ㅇ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br>ㅇ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br>ㅇ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br>ㅇ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br>ㅇ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br>•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br>•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오세혁)·부위원장(권광택) 인사 | |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6(수)<br>11:0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br>ㅇ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br>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br>ㅇ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기획경제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7(목)<br>10:0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br>• 의사일정 변경<br>ㅇ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 |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8(금)<br>10:00<br>(제2차) | ▢ 안건처리<br>○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br>○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br>○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br>○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기획조정실 소관)<br>○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일자리경제실 소관)<br>○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 |
| 8. 31(월)<br>10:00<br>(제3차) | ▢ 안건처리<br>○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br>((재)대구경북연구원 소관))<br>○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br>((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7(목)<br>11:0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br>ㅇ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br>ㅇ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br>ㅇ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br>ㅇ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br>ㅇ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ㅇ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 |
| 8. 28(금)<br>10:00<br>(제2차) | □ 안건처리<br>ㅇ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및 출연기관 소관)<br>ㅇ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br>ㅇ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br>ㅇ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 |

〈문화환경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7(목)<br>10:0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br>ㅇ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br>ㅇ 주요업무보고의 건<br>(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br>ㅇ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br>ㅇ 주요업무보고의 건<br>(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 |

〈농수산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27(목)<br>14:0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br>ㅇ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br>ㅇ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 |
| 8.28(금)<br>10:30<br>(제2차) | ▢ 안건처리<br>ㅇ 2020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br>ㅇ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br>ㅇ 2020년 업무보고의 건(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br>ㅇ 2020년 업무보고의 건((재)독도재단 소관) | |

〈건설소방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26(수)<br>17:5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 |
| 8.27(목)<br>10:30<br>(제2차) | ▢ 안건처리<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재난안전실 소관)<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br>ㅇ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br>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br>(건설도시국 소관) | |

〈교육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27(목)<br>11:0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br>ㅇ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ㅇ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br>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br>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6(수)<br>16:2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br>• 위원장(최병준) 인사<br>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br>• 부위원장(이종열) 인사 | |
| 9. 3(목)<br>11:00<br>(제2차) | ▢ 안건처리<br>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윤리특별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8. 26(수)<br>16:40<br>(제1차) | ▢ 안건처리<br>ㅇ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br>• 위원장(곽경호) 인사<br>ㅇ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br>• 부위원장(정근수) 인사 | |

# Ⅲ. 의안처리

| 구 분 | | 접수<br>ⓐ+ⓑ+Ⓒ | 처리<br>ⓐ+ⓑ | 의 결 | | | | | 철<br>회<br>ⓑ | 계<br>류<br>Ⓒ | 비고 |
|---|---|---|---|---|---|---|---|---|---|---|---|
| | | | | 계<br>ⓐ | 가 결 | | 부<br>결 | 폐안 | | | |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 계 | | 33<br>(576) | 33<br>(565) | 33<br>(563) | 32<br>(524) | 0<br>(35) | 1<br>(4) | 0<br>(0) | 0<br>(2) | 0<br>(11) | |
| 조례안 | 소 계 | 20<br>(316) | 20<br>(308) | 20<br>(308) | 20<br>(287) | 0<br>(19) | 0<br>(2) | 0<br>(0) | 0<br>(0) | 0<br>(8) | |
| | 의회<br>제안 | 10<br>(216) | 10<br>(208) | 10<br>(208) | 10<br>(198) | (9) | (1) | | | (8) | |
| | 도지사<br>제 출 | 7<br>(69) | 7<br>(69) | 7<br>(69) | 7<br>(61) | (8) | | | | | |
| | 교육감<br>제 출 | 3<br>(31) | 3<br>(31) | 3<br>(31) | 3<br>(28) | (2) | (1) | | | | |
| 규 칙 안 | | 0<br>(4) | 0<br>(4) | 0<br>(4) | (4) | | | | | | |
| 예산·결산 | | 1<br>(27) | 1<br>(27) | 1<br>(27) | 1<br>(15) | (12) | | | | | |
| 동의·승인 | | 2<br>(69) | 2<br>(69) | 2<br>(67) | 2<br>(62) | (4) | (1) | | (2) | | |
| 건 의 안 | | 0<br>(3) | 0<br>(3) | 0<br>(3) | (3) | | | | | | |
| 결 의 안 | | 3<br>(41) | 3<br>(41) | 3<br>(41) | 3<br>(41) | | | | | | |
| 기 타 안 | | 6<br>(115) | 6<br>(112) | 6<br>(112) | 6<br>(112) | | | | | 3 | |
| 청 원 | | 1<br>(1) | 1<br>(1) | 1<br>(1) | | | | 1<br>(1) | | | |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18회) 의회 누계

# Ⅳ. 민원처리

## 1. 청 원

(단위 : 건)

| 구 분 | 접 수 | | | 처 리 | 처리중 |
|---|---|---|---|---|---|
| | 계 | 이 월 | 금 회 | | |
| 금 회 | | | | | |
| 누 계 | | | | | |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단위 : 건)

| 위원회 | 계 | 행정 | 사회<br>문화 | 교통 | 건설 | 교육 | 경제 | 환경 | 농어업 | 기타 |
|---|---|---|---|---|---|---|---|---|---|---|
| 계 | 2<br>(49) | (11) | 1<br>(2) | (2) | (9) | (3) | (1) | 1<br>(13) | (2) | (6) |
| 의 회<br>운 영 | | | | | | | | | | |
| 기 획<br>경 제 | (7) | | (1) | (2) | (1) | | (1) | (1) | | (1) |
| 행 정<br>보건복지 | (10) | (8) | | | | | | | | (2) |
| 문 화<br>환 경 | 2<br>(13) | | 1<br>(1) | | | | | 1<br>(11) | | (1) |
| 농수산 | (7) | (3) | | | | | | | (2) | (2) |
| 건 설<br>소 방 | (9) | | | | (8) | | | (1) | | |
| 교 육 | (3) | | | | | (3) | | | | |
| 특 별<br>위원회 | | | | | | | | | | |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 나. 처 리

(단위 : 건)

| 위원회 | 처 리 | | | | | 처리중 |
|---|---|---|---|---|---|---|
| | 계 | 처리 | 불수리 | 취 하 | 타기관이송 | |
| 계 | 2<br>(47) | 2<br>(47) | | | | 2 |
| 의회운영 | | | | | | |
| 기획경제 | 1<br>(7) | 1<br>(7) | | | | |
| 행 정<br>보건복지 | (10) | (10) | | | | |
| 문화환경 | (11) | (11) | | | | 2 |
| 농 수 산 | (7) | (7) | | | | |
| 건설소방 | 1<br>(9) | 1<br>(9) | | | | |
| 교 육 | (3) | (3) | | | | |
| 특별위원회 | | | | | | |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 안건 접수 : 33건(조례안 20, 예산안 1, 동의안 2, 결의안 3, 기타안 6, 청원 1)

## 2. 처리 의안 : 33건

- ㅇ 원안가결 : **32건(조례안 20, 예산안 1, 동의안 2, 결의안 3, 기타안 6)**
- ㅇ 부　　결 : 1**건(청원 1)**

## 3. 의안접수 내용

- ㅇ 조 례 안 : **20건**(원안가결 20)

| 연번 | 접수일 | 발의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0. 6. 24 | 이종열 의원 | 경상북도 연구개발 장비 공공활용 조례안 | 원안가결 |
| 2 | 20. 8. 14 | 교육감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3 | 〃 | 교육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4 | 〃 | 교육감 | 경상북도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5 | 〃 | 도지사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6 | 〃 | 도지사 |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7 | 〃 | 도지사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8 | 〃 | 도지사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9 | 〃 | 도지사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
| 10 | 〃 | 도지사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1 | 〃 | 도지사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2 | 〃 | 박판수 의원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연번 | 접수일 | 발 의 자 | 안 건 명 | 비고 |
|---|---|---|---|---|
| 13 | 20.8.14 | 박채아 의원 |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14 | 〃 | 최병준 의원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5 | 〃 | 이재도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 |
| 16 | 〃 | 이칠구 의원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7 | 〃 | 윤승오 의원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18 | 〃 | 나기보 의원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19 | 〃 | 김준열 의원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0 | 〃 | 방유봉 의원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예 산 안 : 1건(원안가결 1)

| 연번 | 접수일 | 발 의 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0.8.14. | 교육감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 원안가결 |

○ 동 의 안 : 2건(원안가결 2)

| 연번 | 접수일 | 발 의 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0.8.14. | 도지사 |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2 | 20.8.14. | 도지사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 |

○ 결 의 안 : 3건(원안가결 3)

| 연번 | 접수일 | 발의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0. 8. 26. |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 2 | 20. 8. 26. | 위원장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3 | 20. 9. 8. | 이춘우 의원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

○ 기 타 안 : 6건(원안가결 6)

| 연번 | 접수일 | 발의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0.8. 26. | 의장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 2 | 〃 | 〃 |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 |
| 3 | 〃 | 〃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 |
| 4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5 | 〃 |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6 | 〃 | 〃 | 휴회의 건 | 〃 |

○ 청 원 : 1건(부결 1)

| 연번 | 접수일 | 발의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0. 8. 5. | 박태춘 의원 |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 부결 |

## 4. 조례 공포 사항 : 20건(도 16, 교육청 4)

| 연번 | 공포번호 | 자치법규명 | 공포일 | 비고 |
|---|---|---|---|---|
| 1 | 제4373호 |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 20. 9. 24. | 도 |
| 2 | 제4374호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3 | 제4375호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4 | 제4376호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5 | 제4377호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6 | 제4378호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7 | 제4379호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8 | 제4380호 |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9 | 제4381호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10 | 제4382호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11 | 제4383호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12 | 제4384호 |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13 | 제4385호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14 | 제4386호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15 | 제4387호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16 | 제4388호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17 | 제4389호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 | 교육청 |
| 18 | 제4390호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19 | 제4391호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20 | 제4392호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Ⅵ.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 2020년 8월 2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폭우와 수해로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고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봉화,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은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는 등 도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도에서는 조속한 복구 지원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는 발 빠른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강은 울산 울주군에서 발원하여 경주를 지나 포항시를 관류하여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길이 63.34㎞에 유역면적이 1,132㎢의 강으로 포항, 경주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형산강 재첩 등 어패류에서 수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산강 오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구무천 수계 오염으로 인한 형산강 오염실태**

- 구무천 퇴적물 : 수은 Ⅳ 등급(2.14㎎/㎏) 초과 → 심각수준
- 구무천 토 양 : 수은 오염대책 기준(30㎎/㎏) 초과 → 심각수준
- 형산강 퇴적물 : 형산대교~섬안대교 수은 Ⅳ 등급 초과 → 심각수준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 중금속의 오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무천 퇴적물은 하천 퇴적물 기준 4등급 이상으로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준으로 최고지점의 수은 농도는 ㎏당 916㎎으로 1등급 기준의 1만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수산업과 해양관광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형산강 오염이 알려지고 4년이 흐른 지금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강바닥이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여전히 어패류조차 먹지 못하고 내수면 어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265명이 미나마타병에 걸렸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의 시작은 강을 중심으로 태동하였고 치산치수라 하여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목민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간에게는 문명을 시작하는 어미 역할을 하였고 21세기인 지금도 물은 인간에게 무한의 자원과 쉴 수 있는 공간 제공과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절대적인 보물창고 역할을 합니다.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는 말처럼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본 의원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 도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돌려줄 책무가 있는 만큼 형산강 중금속 오염 사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현재 형산강 생태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20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4.5㎞ 구간 등 총 7.5㎞ 구간에 생태복원을 위해 60㎝ 깊이로 강바닥의 중금속 퇴적물 준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1m 깊이로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며 본 의원 또한 1m 깊이로 제대로 된 준설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준설 깊이를 늘리게 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바라며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지류의 준설과 더불어 오염된 형산강 본류 또한 준설작업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93년 형산강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장 붕괴로 독성폐기물이 형산강으로 유출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강공단 조성 이후 형산강은 지속적인 오염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동안 환경준설 작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016년 포항시가 형산강 본류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유강보 하류 지점에서 영일만 유입부까지 8㎞의 구간 대부분에서 수은이 4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류의 오염 또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본류 준설을 위해서는 3,0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형산강 오염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속한 준설이 이루어져 오염의 확산 방지와 홍수 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며, 아울러 현재 부조장터 뱃길 복원사업 등 2025년까지 진행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염된 강을 먼저 살려놓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은 물론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태 등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향후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는 물론 발생 이후에도 경북도 차원의 적절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농특산물 등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연일지역의 부조장터문화축제는 조선시대부터 1905년까지 150여 년간 전국의 3대 장터로 이름을 떨친 연일부조장터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전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는 애향심과 문화고장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지역의 포항국제불빛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등은 문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시·군에서 87개의 축제가 매년 혹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고 이들 축제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농특산물 등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단순 오락성, 소모성 축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 또한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북의 많은 축제들이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내 87개의 전체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잘되는 축제는 더 잘되도록, 미흡한 축제는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대로 된 축제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정 축제는 물론 도내 전체 축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도 차원의 지속적인 축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지자체 간 경계지역 민원, 분쟁, 갈등 발생에 대한 경북도의 조정·중재자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민원 발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양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양 지역주민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도민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축사시설의 경우 A군이 허가해준 축사시설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지만 반대편 B시에서 볼 때 축사시설과 주택지 이격거리가 가까워 B시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악취방지법상 해당 군수에게 권한과 인허가 책임이 있음에 따라 B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등 지자체 경계에 위치한 혐오시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연일지역에는 지난 2013년 완공된 9만 5,000㎡ 규모의 중명자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에서 포항시민들은 캠핑과 휴식, 등산을 즐기는 등 휴식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1㎞ 이내에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있고 5㎞ 이내에는 경주시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상황으로 이 두 산단에는 현재 오염배출업체 등 18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명생태공원 완공 이전에도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공원이 완공된 2013년 이후에도 강동산단과 천북산단의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대기오염 9건, 폐수방류 2건 등 총 11건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명자연생태공원에는 악취 등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고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강동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고로 포항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왔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경주시 관내의 산업단지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어디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경북도가 중재자, 조정자로서 참여해 기초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부재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최근 5년간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발생한 민원 건수가 시·군 경계 아파트 주민 불편 문제 등 총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보면서 경북도가 기초지자체 경계지역 간 민원, 분쟁, 갈등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내 전체 시·군 경계지역 간 분쟁, 민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도둑질 빼고는 다 하라'는 적극 행정을 늘 강조해 오셨고 이번 군위·의성 간 통합신공항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지켜보면서 시·군의 만형으로서 경북도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에 대해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포항 중명자연생태공원과 경주 산단 간의 악취 문제 등 도내 여러 곳의 기초지자체 경계지역 간의 문제를 도지사께서는 강조하는 적극 행정으로 충분히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상설화된 협의체 등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이차전지 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정부는 경북 포항의 영일만 일반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을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로 전기차와 드론,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동력원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경북도는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배터리 특구에는 GS건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들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차전지용 양극제·음극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건설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공장이 준공되어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장 준공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준비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관련 인력의 부족 또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의 걱정은 큽니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력들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그 산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잠시라도 주저하는 사이 주도권은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인적자원이며 직업인력, 전문인력 양성만이 생존의 열쇠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인력 양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북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산업기술 인력, 나아가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어 산업 현장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차전지 배터리 특구인 포항지역에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특성화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이 교육감께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남구 대송면에는 학생 수 16명의 대송중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송중학교를 인근 중학교와 통합하고 특성화고 설립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대송중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이차전지산업 특성화고로의 신설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문제 개선과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8월 2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의 성장동력이 될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이겨내고 어제 오전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합의문 발표로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확정을 이끌어내는 등 경북 발전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3백만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송 지역 농촌용수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대의 농경지는 상습 한해 지역으로 수원공 부재와 수리시설 노후로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의 농업용수 공급은 소규모

취입보와 계곡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제한급수와 근본적인 취수원수 부족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불만을 조장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그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거대리 일대 102ha의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거대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기본조사지구 선정, 착수지구 선정, 세부설계, 공사착수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거대지구는 2015년도에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수몰예정 편입부지 중 1ha가 주왕산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전 환경영향평가 입지검토에서 '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수지의 위치를 당초보다 하류 쪽으로 변경하여 다시 예정지 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생태 1등급지로서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후순위로 밀려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본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으면서 농사지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행복이라도 누리기 위한 절박한 사업

입니다. 따라서 일반화된 잣대로만 적용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청송 군민들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또 하나의 숙원인 신풍댐 재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댐 유역인 청송군 현동면과 안덕면, 안동시 길안면 일대는 병보천, 은계천, 눌인천 등 3개 하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홍수안전도 4등급으로서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예보가 있을 때마다 과거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온 태풍 '루사'를 떠올리며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하천 유지수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기상재해가 없는 평년에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반복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신풍댐 재개발 사업은 홍수예방, 하천유지수 확보와 동시에 안정적인 영농기반과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 대상지구 순위 결정에서 거대지구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함은 물론, 신풍댐 재개발사업에도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63개소이며, 연간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터미널 노후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매표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소규모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건물 매입이나 임대, 시설 개선과 운영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국가 사무가 아닌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보아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과 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1>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내역

| 구분 | 지원금 (단위 : 천원) | | | |
|---|---|---|---|---|
| | 소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2017 | 444,410 | 125,000 | 201,000 | 118,100 |
| 2018 | 1,071,000 | 200,000 | 614,000 | 257,000 |
| 2019 | 575,000 | 110,000 | 407,500 | 57,500 |
| 2020 | 743,000 | 100,000 | 568,700 | 74,300 |
| 계 | 2,733,100 | 535,000 | 1,791,200 | 506,900 |

자료화면의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최근 4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이 참여한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은 28억 3,300만 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도비가 5억 3,500만 원, 시·군비가 17억 9,100만 원, 자부담이 5억 700만원으로 도비지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버스터미널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비롯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의 경우 38개소에 7억 3,300만 원, 금년에는 42개소에 9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는 점차 다가오는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용버스터미널이 이용객의 감소로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과 지원을 영세터미널 사업자와 시·군에 전적으로 맡겨둔다면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 악화로 운영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아직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전남의 경우에는 48개소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이 5개소로, 경영난 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하는 곳을 시 · 군에서 직접 인수하여 4개소는 직영하고, 한 곳은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도 참조하면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터미널 운영에 따른 지원 방안,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금년에 정부에서는 5,9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7개 품목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의 전국 평균은 국가가 50%, 자체가 25~40%, 농가에서 10~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비 50%와 자부담 15%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35%에 대해서는 도비 8.8%와 시 · 군비 26.2%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고, 금년에도 1,432억 원의 사업비로 모두 5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중 도비가 126억 원, 시 · 군비 375억 원, 국비와 자부담이 931억 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타 시 · 도에서는 지방비 중 시·도비 지원이 대부분 30% 이상입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시 · 군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도입해서 그간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

까지 여러 차례 개편이 될 때마다 농민들은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년에는 보상수준을 더욱 낮추어 농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편 이유를 보면 농가의 보험가입률이 2016년 27.5%에서 2019년 3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2016년 1,114억 원에서 2019년 9,089억 원으로 8배 이상 급증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그와 더불어 일부 농민들의 보험금 부당수령을 방지하여 다수의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반박은 이 제도 시행 당시 농작물재해보험은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가입을 권장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상률을 낮추는 처사는 농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식 같은 농작물을 볼모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내용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금년부터 사과를 비롯한 과수 4종의 적과 전 종합보험의 경우 피해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적과 전에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게 금년에 바뀐 보상율과 기존의 자기과실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은 피해액의 30 ~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며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편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농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복잡하고 불합리한 보험약관으로 농민이 손에 쥐는 보상액은 실제 입은 피해에 견주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농업분야의 자연재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난임에도 상당 부분을 농민의 과실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수품목의 피해율 심사기준이 농작물 상품성이 아닌 단순한 수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나 병해충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오직 낙과된 수량만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민들은 적과 종료 이후에 새나 멧돼지 등의 유해조수 피해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함께 지금과 같이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손해율을 해당 시·군의 모든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혜를 받은 농가에 한해 선별적으로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체계로의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으로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농촌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만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시·도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10개 주관지표를 중심으로 28개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 2> 2019 주관지표 세부지표별 만족도 조사 결과

| 주관지표 | 세부지표 | 만족도(5점) | |
|---|---|---|---|
| | | 전국 | 경북 |
| 삶의 만족도 | 개인 삶 | 3.61 | 3.42 |
| | 지역생활 | 3.54 | 3.31 |
| 주거 | 주거 상태 | 3.81 | 3.65 |
| | 기초 생활여건 | 3.88 | 3.66 |
| 교통 | 대중교통 이용 | 3.64 | 3.48 |
| | 주차장 이용 | 3.27 | 3.28 |
| 산업 일자리 | 일자리 기회 | 2.92 | 2.48 |
| | 소득창출 | 2.94 | 2.58 |
| 교육 | 초중고 교육 질 | 3.55 | 3.26 |
| | 성인 교양 및 취미 | 3.45 | 3.13 |
| | 보육시설 충분 | 3.52 | 3.21 |
| | 학교외 교육 | 3.29 | 3.06 |

| 주관지표 | 세부지표 | 만족도(5점) | |
|---|---|---|---|
| | | 전국 | 경북 |
| 문화여가 | 문화시설 접근편리성 | 3.41 | 3.09 |
| | 체육시설 접근편리성 | 3.46 | 3.20 |
|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3.26 | 2.97 |
| |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 3.28 | 3.07 |
| 안전 | 자연재해 및 재난예방 | 3.66 | 3.36 |
| | 치안 | 3.52 | 3.45 |
| | 119 신속출동 | 3.83 | 3.74 |
| 환경 | 소음, 악취, 폐기물 처리 | 3.59 | 3.44 |
| | 자연환경보전 | 3.54 | 3.56 |
| | 공원/녹지 | 3.46 | 3.54 |
| | 대기질 | 3.05 | 3.04 |
| 보건복지 | 병/의원, 약국 이용 | 3.73 | 3.39 |
| | 의료서비스 수준 | 3.57 | 3.19 |
| | 사회복지 서비스 | 3.48 | 3.20 |
| 시민참여 · 공동체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 | 3.64 | 3.62 |
| | 주민 참여 | 3.33 | 3.40 |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28개 세부지표 중 주차장 이용, 자연환경보전, 공원·녹지, 주민참여 등 4개 부문의 지표를 제외하고 일자리 기회 부문에서, 소득창출 부문에서,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그 외 거주여건 만족도와 교통여건 만족도 부문 등 24개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자면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경북호가 출범하면서 도민에게 제시한 비전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이 가슴과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차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비전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수립과 정책연구협의체 구성 운영 등 도민체감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8월 2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퇴치와 경북 발전과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의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전 소재 지역인 경주와 울진 지역이 고용 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원전 24개 중에 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 고용 증대와 법정지원금 유입, 지방 세수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에 추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그리고 경주 월성 1호기가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원전산업은 경북에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릴 경제 대동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경북 원전의 전력 생산량과 원전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경북 내 총생산의 6%인 6조 2,000억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 경북도 지역 경제에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의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 원전 지역의 피해는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의 고용 감소와 약 9조 4,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 분석**

| 경제적 피해 | 총 약 9조 4,935억원<br>지역 고용감소 연인원 1,272만명 |
|---|---|
| ○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br>- 신규원전 백지화<br>- 기타 지원금 감소 | **총 약 5조 360억원**<br>약 5조원<br>약 360억원 |
| ○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br>- 기회비용<br>- 갈등의 사회적 비용 | **총 약 4조 4,195억원**<br>약 2조 604억원<br>약 2조 3,591억원 |
| ○ **기타 지원금 감소** | **약 380억원** |
| ○ **지역 고용감소** | **연인원 1,272만명** |

출처: 건국대 김준모 교수

**탈원전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경제적 피해만 약 9조 4,935억원, 지역 고용감소 연인원 1,272만명에 달해!**

이렇듯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 지역 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산업은 원전 소재 지역인 경주와 울진 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피해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탈원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서 앞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월성 2·3·4호기, 한울 1 · 2호기가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상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8,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경주 감포읍에 국책사업으로 2028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면 단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인구유입과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약 7,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3,000억에 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원자력연구원과 관련 시설들이 울산을 경계로 하는 감포 해양관광단지 내에 조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은 물론 세수 외 경주시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원자력연구원 핵심시설 중에 바닷가 해안, 해수와 관련된 시설은 동해안에 조성하고, 사이언스 빌리지를 포함한 그 외 시설과 연관 기업들을 도심권의 원자력환경공단 본사와 양성자과학단지 인근 지역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양성자 연구와 함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 효과와 신경주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경주 발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3자 간에 협의한 업무협약서 내용 중 제3조 협약 당사자의 역할에서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부지 확보와 개발 등을 위해 각각 900억과 300억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토록 이미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관한 특정 지역의 관련 시설이나 기업의 배치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제5조의 운영사업비 지원 내용에서 '협약 당사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분담에 상호 협력하며 그 방법은 협의체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도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및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산업인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지방비 지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설 및 관련 기업의 배치, 예산 지원 등의 사항들은 추가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방침과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월성 원전 임시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저장률은 95.4%이며, 2022년 3월쯤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16만 8,000다발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통해서 지난 7월 24일 81.4%의 찬성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 간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포화 시점이 도래되면 당연히 정부가 맥스터를 건설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탈 원전을 조기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난 8월 20일 정부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8월 중 착공해서 포화 시점 전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맥스터 건설 과정 및 운영 전 과정을 시민 참여자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중·저준위 처분장이 있는 지역은 고준위처분시설을 둘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십 년째 임시저장시설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토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합리적 보상 방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79년 서거 후 이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2011년 경주고도보존 계획 수립 등에 따라 신라왕경에 대한 발굴과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공약 사업으로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복원사업의 규모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원 가량의 계획으로 일부 추진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의 백제사, 가야사 우선정책 시행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신라왕궁, 황룡사 9층 목탑 등 8개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법에 명시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최종 복원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9,450억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 2,000억, 고용유발효과는 약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법에 의해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올해 12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후속대책이 미흡해 걱정입니다.

신라사보다 역사나 규모가 작은 가야사 복원·정비도 경상남도에서는 방대한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가야사 복원·정비팀을 별도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1단 3팀에 12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주시에서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더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볼 때 우리 경북도 빠른 시일 내에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신설을 통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법의 근거에 의하여 정부예산이 사업초기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경북도가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근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 법과 관련한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라왕경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으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계획과 이철우 도지사님의 각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 노후 저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훨씬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 국토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사전 예방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사전 점검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경북 도내 저수지는 총 5,462개소이며 그중 시·군 관리 대상이 4,800개로서 88%에 비해 농어촌공사 관리 대상은 12%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물 85% 이상이 50년에서 7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어 홍수 수위 조절 등 재해 기능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장마철 노후 저수지의 붕괴는 자칫 잘못하면 하류지역의 주택

침수와 농경지, 도로, 하천이 유실·매몰되는 대참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경기도 이천·안성 지역 저수지의 둑이 붕괴되었고 2013년 경주 산대저수지, 북군저수지, 2014년 영천 괴연저수지의 붕괴를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노후 저수지의 시설물 전면 개량과 준설·보수·보강을 통해서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 등에 따른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수지는 호우 시 재해 예방에 유용함은 물론 갈수기에 담수율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기적소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삶의 젖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예산부족 등으로 준설 정비 사업을 제때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연도별 저수지 준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조속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도내 다문화 학생은 1만 594명으로 2010년부터 한 해 평균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상북도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앞서 경주 내남면에 8학급 120명 규모의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올해 개관 예정이었으나 부지 선정과 문화재 발굴 등으로 원래 계획보다 2년 이상 연기되었고 일부 예산도 이월된 상태입니다.

한국어교육센터 건립은 1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사회에 빨리 적응토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 착공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경주한국어교육센터 규모로는 양질의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미래의 경북 다문화 학생 수요에 발맞추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Ⅶ. 5분 자유발언

## □ 2020년 9월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경북도 감염병 검사 역량 강화 촉구≫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였고, 얼마 전까지는 '확진자 0'이라는 행진이 이어지는 등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15 서울 광복절행사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발 코로나는 전국을 강타하였고 우리 경북도 예외 없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심환자의 신속한 병원체 규명과 접촉자에 대한 빠르고 선제적인 검사가 이번 코로나 극복의 시발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난 6월까지 도내 코로나19 관련

검체 건수 2만 3,142건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처리한 건수는 6,662건으로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71%에 달하는 1만 6,480건은 외부 민간검사기관에서 처리되어 26억 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웅도 경북의 감염병 검사 역량이 외부 민간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본 의원은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에 관한 검사와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또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의 감염병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의심환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신속 대응이 사태 해결의 열쇠인 만큼 본 의원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중 서울, 경기, 강원 등 9개 시·도에서는 이미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특히 대구, 경남의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 7월 감염병연구부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 보건연구부는 18명의 인력이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분의 1 수준만 처리되었고 그동안의 피로누적은 물론 인력과 공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인력 충원과 검사 장비를 보충하여 감염병 전문 연구동 증축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상북도의 코로나19 검사기능은 하루 200건에서 1,000건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향후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코로나의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경상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박영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SOC 예산 재정확대와 조기 건설투자로 경기회복과 지역건설 산업 살리기 촉구 관련≫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영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 태풍피해 대책과 통합신공항 부지확정 등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상북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뉴딜정책 SOC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산업 전반을 흔든지 벌써 7개월째 접어들며, 경제 문제 등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의 소비와 생산은 줄어들고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중기육성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버티기식 또는 반짝 효과에 그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자생적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건설경기 전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지역형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은 생산, 취업, 고용 유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건설업 활성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대표적 경기부양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OC 건설 등에 정부투자가 1조 원 늘어날 경우 첫해 GDP가 6,400억 원 증가하며, 재정승수가 0.64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1조 원의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첫해 고작 0.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SOC 분야 1조 원 지출에 대한 고용승수와 건설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재정수단입니다.

이렇듯 SOC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SOC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2019년 1조 1,886억 원에서 2020년 7,828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은 건설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SOC사업의 과감한 예산 투입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가량 늘린 26조 원을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도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함께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도 마다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은 단순한 채무·적자가 아닌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투자나 다름없습니다.

2019년 기준 경북도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12.82%에 못미친 12.29%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의 주의채무비율 25%나 재정위기단체 심각채무비율 40% 요건을 월등하게 하회하는 등 확장적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안 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SOC 예산 재정확대와 조기 건설투자로 경기회복과 지역 건설 산업 살리기에 대해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도시 분야 시책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반영한 2021년도 본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부실한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원활한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만, 경상북도 최대 사업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이전 후보지 합의를 이끌어내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미흡했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도권 확보 실패입니다.

국방부는 군위군에 공항이전 후보지를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를 모두 포함시켜 선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과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군위군에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고,

이에 반발한 의성군이 또다시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구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군위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못 이겨 경북도의원 전원에게 집행부가 사전 설명도 없이 부단체장을 동원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하라는 일방적인 서명을 강요받았습니다.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느꼈던 점은 거의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경상북도는 공항이전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갈등관리의 부재입니다.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실시 이후 군위군은 단독 후보지, 의성군은 공동 후보지를 각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신청 했고 7월 3일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할 때까지 6개월 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전혀 두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갈등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국책사업 선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나쁜 선례를 남겼 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내에 다른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조직적·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학습이 되어 앞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옥동자를 낳을 때는 원래 산고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산고 끝에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조기건설과 개항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조성사업에 9조 원 이상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 확보방안, 관련법 제·개정과 행정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전용 허가권, 그린벨트 해제, 민간 사업자 조기선정 등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목별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 항 목 | 생산유발액 | 부가가치유발액 | 취업유발인원 |
|---|---|---|---|
| 공항 건설 | 9,784,141 | 4,310,112 | 105,242 |
| 연결 교통망 구축 | 13,659,659 | 4,892,618 | 98,750 |
| 배후도시 건설 | 1,443,572 | 517,059 | 10,436 |
| 항공산업 | 1,134,672 | 462,735 | 12,006 |
| 항공물류 | 235,458 | 56,701 | 567 |
| 공항서비스 | 9,134,181 | 4,845,637 | 171,291 |
| 배후도시 총 생산 | 427,158 | 165,269 | 3,793 |
| 지역주민 이동 비용 절감 | 148,072 | 66,999 | 3,459 |
| **합 계** | **35,966,915** | **15,317,130** | **405,544** |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은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51조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41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23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3백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공공시설 등 비상벨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도내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과 각급 학교에 경찰과 소방을 연계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표1. 2017~2018년 범죄발생 장소별 범죄건수〉

| 연도별 | 유원지 | 학교 | 주차장 | 공중화장실 | 계 |
|---|---|---|---|---|---|
| 2017년 | 5,203 | 5,155 | 20,936 | 2,081 | 33,375 |
| 2018년 | 6,770 | 6,606 | 24,795 | 4,224 | 42,395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 정보]

2018년 경찰청의 범죄 발생 장소 통계에 따르면 유원지, 학교, 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4만 2,400건으로 2017년 대비 9,02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형태를 살펴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 1,100건, 폭력범죄 1만 6,200건, 성풍속범죄 1,600건 등 총 1만 8,900건으로 전체 범죄의 44.5%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최근 이 같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경북도에서도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기계적 감시 기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3. 공공시설 경찰 및 소방서 연계 비상벨 설치 현황>**

| 구분 | 개소수 | 응급·안심벨 설치개수 | | | | |
|---|---|---|---|---|---|---|
| | | 경찰연계 | 소방서연계 | CCTV관제센터 등 | 합계 | 비율 |
| 도시공원 | 873 | 47 | 0 | 58 | 105 | **12.0%** |
| 공공체육시설화장실 | 709 | 121 | 0 | 0 | 121 | **17.1%** |
| 어린이 공원 | 790 | 14 | 0 | 136 | 150 | **19.0%** |

[경북도청]

경북도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경찰, 소방서, CCTV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비상벨 설치율은 도시공원 12%, 공공체육시설 내의 화장실 17%, 어린이공원 19%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상해나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도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과 경찰·소방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북 도내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외부 침입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 각급 학교의 비상벨 설치를 통한 학교 안전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4. 경북도내 각급학교 비상벨 설치 현황〉

| 구분 | 개소수 | 응급·안심벨 설치개수 | | | | |
|---|---|---|---|---|---|---|
| | | 경찰연계 | 소방서연계 | 학교연계 | **합계** | 비율 |
| 학교 | 1,678 | 6 | 2 | 99 | **107** | **6.4%** |

[경북교육청 자료]

경북 도내 1,678개 학교 중 경찰과 소방이 연계된 비상벨 설치 학교는 8개교에 불과합니다. 학교 내부에만 연계된 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학교 중 6.4%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곳도 주로 돌봄교실, 장애인 화장실, 유치원 등 특정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내 각급 학교 전체에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간을 보면 전체 안전사고 5,100건 중 선생님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간인 점심, 휴식, 청소시간 및 행사시간에 2,150건으로 전체 대비 42%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사고를 알리러 가야 하고 다시 사고 발생 현장을 인지하는 동안 사고 조치와 신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증도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비상벨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는 대상으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경찰관보다 교사에게 알리는 비율이 27%로 훨씬 많은 만큼 폭력이나 사고에 대한 학교의 후속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사는 대응 미숙, 부적절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히 조치하고, 학교폭력 및 외부 침입자 등에 의한 범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 운동시설, 계단 및 복도,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학교 건물 주변의 우범지역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소방을 연계하는 경북교육청 학교 안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시설과 학교의 안전사고 및 범죄와 학교폭력은 신속·정확·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광역행정과 교육행정이

경찰과 소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0년 9월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 ◎

###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한 경북도의 역할 관련≫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의 지방재정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는 그야말로 재정분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저성장, 지역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조정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재정 안정화와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시·군 간 재정상황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1인당 세출 및 부담액 비교(2019년)**

| 구분 | 총 세출 | 1인당 지출 | 지방세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비고 |
| --- | --- | --- | --- | --- | --- |
| 구미 | 1조 205억원 | 242만원 | 3,732억 6천만원 | 88만 5천원 | 1인당 지출액 1/4 수준 |
| 도내 A군 | 3,834억 4천만원 | 1,167만원 | 111억 8,300만원 | 34만원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6배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구미시 세출 예산이 1조 205억 원으로 1인당 2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3,732억 6,000만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금액은 88만 5,000원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도내 A군의 경우 세출 예산이 3,834억 4,000만 원으로 1인당 1,167만 원 지출한 셈이며,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111억 8,300만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금액은 34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도내 시·군의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는 9.2%에 불과합니다.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시 · 군 평균이 227만 원인데 비해 구미시는 28만 원입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볼 때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미시 재정 현황

| 구분 | 2017년 | 2020년 | 2017년 대비 2020년 증감 | 비고 |
|---|---|---|---|---|
| 재정자립도 | 43.7% | 37.9% | -5.8%p | 대폭하락↓ |
| 자체사업 비중 | 34.8% | 28.4% | -6.4%p | 대폭감소↓ |
| 사회복지비 비중 | 23.8% | 29.6% | +5.8%p | 대폭증가↑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대폭 낮아지고,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지역경제를 견인해 줄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국정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내의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경북도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도와 시·군 간의 재원 분담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도비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도비·시비 7 대 3을 5 대 5로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님께서는 누누이 적극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민이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 시·군의 재정여건과 지역 역량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재원 확보 및 편익 측면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0년 9월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박차양 의원(농수산위원회 ) ◎

### ≪경주 감포항 친수공간 월파 피해 대책≫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전국을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북지역은 해양수산 550억, 농작물 320억, 7만 가구의 정전으로 인해 1,000억이 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안 경주, 포항, 울릉, 영덕, 울진에는 선박 79척, 항만·어항 27개소, 양식장 12개소, 레저시설 8개소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이선의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의 무시무시한 월파로 친수공간 일대가 쑥대밭이 돼 버렸습니다. 주택·상가 침수 37가구, 이재민 56명, 부상 8명, 차량 파손 여덟 대, 배후지 외 블록 유실 3만 5,000㎡, 그 피해액은 3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감포항 정비사업은 어선안전 수용과 해양관광,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어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450억으로 2010년에 착공해 2018년 1월에 완공했습니다. 2015년

준공된 친수공간은 부지면적 3만 5,800㎡에 총사업비 96억을 들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했습니다.

화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18년 콩레이 때 모습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주택가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온 하이선입니다.

저지대가 아님에도 저지대로 전락하고 7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다. 목에까지 물이 차 겨우 뒤 봉창 문을 열고 산으로 갔다. 파도가 차를 쳐 집으로 들어오고 유리 파편 속에 바위로 올라갔다. 전기 정전으로 수족관을 보다가 수족관에 빠져 휩쓸리고 구사일생 나왔으나 통신 두절로 119가 늦어 엄마는 48바늘을 꿰매고 대학생 딸은 손 접합 수술을 했으나 희망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장시간의 정전과 통신 두절은 더 큰 피해를 키웠습니다. 비는 거의 오지 않은, 9㎜에 소금물이 온 동네를 뒤덮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피해 상황과 관련 자료,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봅니다. 콩레이 때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C값이었습니다. 700억 정도 소요되는 조성비를 예비타당성 심사를 안 받기 위해 줄인 데 있습니다. 공직자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며 편법을 써서도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경주시, 경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하이선에 대비하여

톤백 550개로 둑을 쌓고 방파제를 깨서 물길도 냈습니다.

4일에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방문해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 해주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해안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건의했다니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는 해안선 537㎞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 계획성 있게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항 100년을 앞둔 감포어항을 연안항으로 지정·변경 해야 합니다. 조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 조　례　안(20건) ································ 85

□ 예　산　안( 1건) ······························ 173

□ 동　의　안( 2건) ······························ 177

□ 결　의　안( 1건) ······························ 187

## 조 례 안

○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이종열 의원('20. 6. 24)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 8. 14)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 8. 14)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 8. 14)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판수 의원('20. 8. 14)

○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채아 의원('20. 8. 14)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20. 8. 14)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재도 의원('20. 8. 14)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칠구 의원('20. 8. 14)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승오 의원('20. 8. 14)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기보 의원('20. 8. 14)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열 의원('20. 8. 14)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방유봉 의원('20. 8. 14)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중앙정부 또는 도의 재원이 포함된 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 산하기관 · 연구기관 · 대학 등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적으로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2.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3.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6.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7. 공동활용장비의 성능고도화 방안 수립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전담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활용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등 조사·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제8조의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주관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은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전담기관과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불용처리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연구

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담당 국장과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실무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장비담당 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장비 사용료) ①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br>① (생 략) |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br>① (현행과 같음) |
|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18조(특별휴가) ① (생 략) | 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삭 제〉 |
| ③ 삭 제 | |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의 | 〈삭 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
| 〈신　설〉 |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 〔별표 4〕<br><br>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br><br>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br>「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br>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br>-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br>-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br>※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별표 4〕<br><br>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br><br>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br>「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br>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br>-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br>-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br>〈삭제〉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를 말한다)의 구입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br>1. ~ 9. (생 략)<br><신 설> | 제4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br>1. ~ 9. (현행과 같음)<br>10.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를 말한다)의 구입비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견된 공무원 포함"을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교직원을"을 "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중등과정”을 “중등교육과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 1. -----------------------------------------------------------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 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제3조(신고기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제3조(신고기한) ① ------------------------------------------------------------------------ 3년 ----------. |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관, 중등과장으로 한다. | 2. ―――――――――― 중등교육과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폭력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법 제

8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3. 여성폭력 위기상담과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지원사업
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이여성행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법원,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법률 및 수사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
2. 기술검토수당: 1건당 20,000원
3.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일당 20,0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
2. 경북학숙 건립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그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  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 조직 정원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도"를 "제17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를 "및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군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란 도지사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 〈삭 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제28조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br>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br>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br>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장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 제2장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 |
|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9조(기능)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의2에 따른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10조(구성) ①·② (생 략) |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 |
|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1. ―――――――― 및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7조의2(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제3장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 〈삭 제〉 |
| 제18조(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br>② 진흥원은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삭 제〉 |
| 제19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br>2. 평생교육 상담<br>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br>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br>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br>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br>7. 학습계좌제 운영<br>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br>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br>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 제21조(지정·운영절차 등) ①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br>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br>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br>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br>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br>② 도지사가 진흥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삭 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2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br>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③ 진흥원에는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br>④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필요시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br>⑤ 진흥원에는 영 제22조 관련 "별표 2"의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br>⑥ 진흥원에는 제19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삭 제〉 |
| 제23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br>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br>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br>3.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한 때 | 〈삭 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27조의2(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6조제1항 중 “문해교육협의”를 “문해교육협의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br>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추진주체 등)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u>문해교육협의</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주체 등) ① ---------- ------------------------------ ------------------------------ ------------------------------ --------------- <u>문해교육협의회</u>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2025년 11월 4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br>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br>1. ~ 4. (생 략)<br>③ ~ ⑤ (생 략) |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br>② ----- 업무소관 부지사--------------------------------------------------------------------------------------------------------------------------------------------------------------------------------------------.<br>1. ~ 4. (현행과 같음)<br>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1월 4일까지로 --. ---------------------------------------------------------------------------------------------------------------------------------------------.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br>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br>③ ~ ⑥ (생 략)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 업무소관 부지사------<br>-------------------------------<br>-----------------.<br>③ ~ ⑥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관리
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북도 간행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② (생 략) |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
| 〈신 설〉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
| 2. ~ 4. (생 략) |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3.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경상북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하여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을 포함한다)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확보 :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제7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
| 가. 전시시설 연면적 |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 나. 사무실 |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br>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br>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
| 다. 정비·성능점검 시설 |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출구 및 입구 | · 전시시설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 략)<br>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br>②·③ (생 략) |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br>1. (현행과 같음)<br>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br>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br>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br>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br>②·③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자, 주민 및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

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 고용 · 경제 ·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 담당 실 · 국 · 본부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노사민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으로 협조체계 유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도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도가 주관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노사민정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 지원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3.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4. 노사 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5.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6.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7.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8.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펀드 사업
9. 그 밖의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행한 결정으로 본다.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

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일 가정 양립실현 등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주여성 농어업인"을 "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자문에 응하기"를 "자문을 받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생 략)<br>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br>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br>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br>〈신 설〉<br><br><br><br><br>〈신 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r>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br>2. ------------------- 제2조제4호에 따른----------------.<br>3. ----------------------------제2조제5호에 따른--------------------.<br>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일 가정 양립실현 등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삭 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br>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br>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
| <신 설> | 제6조의2(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br>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신 설〉 | 제6조의3(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br>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1. ~ 6. (생 략) |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각 호------------ 마련-----------.<br>1. ~ 6. (현행과 같음) |
|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귀농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1. ~ 4. (생 략)<br>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 이주 여성 농어업인------------------------------------------각 호-----마련---------.<br>1. ~ 4. (현행과 같음)<br>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0조(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둔다.<br>② (생　략) | 제10조(자문회의) ① ------------------------------------------ 자문을 받기---------------------------------------------------------------------. <br>②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 산 안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20. 8. 1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예산규모

(단위: 천원, %)

| 추경증감 | 기정예산 | 합 계 | 증감률 |
|---|---|---|---|
| △112,723,035 | 4,783,748,172 | 4,671,025,137 | △2.4 |

□ 세입(관별)

(단위: 천원, %)

| 구 분 | 추경증감 | 구성비 | 기정예산 | 구성비 | 합계 | 증감률 |
|---|---|---|---|---|---|---|
| 합 계 | △112,723,035 | 100.0 | 4,783,748,172 | 100.0 | 4,671,025,137 | △2.4 |
| 1. 이전수입 | △133,891,708 | 118.8 | 4,642,802,622 | 97.1 | 4,508,910,914 | △2.9 |
|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136,872,201 | 121.4 | 4,232,099,527 | 88.5 | 4,095,227,326 | △3.2 |
|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3,052,101 | △2.7 | 407,138,969 | 8.5 | 410,191,070 | 0.7 |
| 다. 기타이전수입 | △71,608 | 0.1 | 3,564,126 | 0.1 | 3,492,518 | △2.0 |
| 2. 자체수입 | 21,168,673 | △18.8 | 51,213,211 | 1.1 | 72,381,884 | 41.3 |
|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 △74,900 | 0.1 | 7,132,805 | 0.1 | 7,057,905 | △1.1 |
| 나. 행정활동수입 | △171,982 | 0.2 | 995,987 | 0.0 | 824,005 | △17.3 |
| 다. 자산수입 | 10,246,894 | △9.1 | 6,889,736 | 0.1 | 17,136,630 | 148.7 |
| 라. 이자수입 | 110 | 0.0 | 6,214,626 | 0.1 | 6,214,736 | 0.0 |
| 마. 금융자산회수 | 100,000 | △0.1 | 0 | 0.0 | 100,000 | 순증 |
| 바. 기타수입 | 11,068,551 | △9.8 | 29,980,057 | 0.6 | 41,048,608 | 36.9 |
| 3. 기타 | 0 | 0.0 | 89,732,339 | 1.9 | 89,732,339 | 0.0 |
| 가. 전년도이월금 | 0 | 0.0 | 89,732,339 | 1.9 | 89,732,339 | 0.0 |

□ 세출(정책사업별)

(단위: 천원, %)

| 구 분 | 추경증감 | 구성비 | 기정예산 | 구성비 | 합계 | 증감률 |
|---|---|---|---|---|---|---|
| 합 계 | △112,723,035 | 100.0 | 4,783,748,172 | 100.0 | 4,671,025,137 | △2.4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90,843,676 | 80.6 | 4,570,478,826 | 95.5 | 4,479,635,150 | △2.0 |
| 가. 인적자원운용 | △34,443,364 | 30.6 | 1,978,987,214 | 41.4 | 1,944,543,850 | △1.7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10,456,879 | △9.3 | 369,682,420 | 7.7 | 380,139,299 | 2.8 |
| 다. 교육복지지원 | △5,057,601 | 4.5 | 453,704,998 | 9.5 | 448,647,397 | △1.1 |
|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1,721,697 | 1.5 | 52,611,389 | 1.1 | 50,889,692 | △3.3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15,637,358 | 13.9 | 1,083,001,906 | 22.6 | 1,067,364,548 | △1.4 |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44,440,535 | 39.4 | 632,490,899 | 13.2 | 588,050,364 | △7.0 |
| 2. 평생·직업교육 | △1,506,913 | 1.3 | 19,526,013 | 0.4 | 18,019,100 | △7.7 |
| 가. 평생교육 | △1,379,413 | 1.2 | 8,757,003 | 0.2 | 7,377,590 | △15.8 |
| 나. 직업교육 | △127,500 | 0.1 | 10,769,010 | 0.2 | 10,641,510 | △1.2 |
| 3. 교육일반 | △20,372,446 | 18.1 | 193,743,333 | 4.1 | 173,370,887 | △10.5 |
| 가. 교육행정일반 | △2,591,413 | 2.3 | 45,529,006 | 1.0 | 42,937,593 | △5.7 |
| 나. 기관운영관리 | △10,485,144 | 9.3 | 53,297,887 | 1.1 | 42,812,743 | △19.7 |
|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470,015 | 0.4 | 29,445,227 | 0.6 | 28,975,212 | △1.6 |
| 라. 예비비및기타 | △6,825,874 | 6.1 | 65,471,213 | 1.4 | 58,645,339 | △10.4 |

## 동 의 안

○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0. 8. 14)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도지사('20. 8. 14)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교환

- 목 적 : 관상어의 새로운 산업적 가치창출을 위한 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도·시유부지 교환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0. 10월
- 위 치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58 일원 외 3필지
- 교환대상
  - 도유재산 : 토지면적 15,893㎡, 1,297백만원
    ※ 상주소방서 (구)예정부지
  - 시유재산 : 토지면적 45,071㎡, 1,297백만원

| 구 분 | 도유 재산 |
|---|---|
| 위 치 | 화개동 71 |
| 면 적 | 15,893㎡ |
| 공시지가 | 81,600원/㎡ |
| 산정금액 | 1,297백만원 |

↔

| 시유 재산 | | | |
|---|---|---|---|
| 계 | 낙동면 낙동리1558 일원 | 함창읍 오사리 170-1 | 사벌국면 업암리 533-6 |
| 45,071㎡ | 42,900㎡ | 1,234㎡ | 937㎡ |
| | 25,100원/㎡ | 152,808원/㎡ | 33,400원/㎡ |
| 1,297백만원 | 1,077백만원 | 189백만원 | 31백만원 |

□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

• 목 적 : 공유재산의 현재 및 미래에 활용도(규모, 형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활용 및 보존가치가 없어 처분 필요

• 대 상

| 토지소재지 | 지 목 | | 전체지적/매각(용도폐지) 지적(㎡) | 공시지가 (천원) | 대장가격 (천원) |
|---|---|---|---|---|---|
| | 공부 | 현황 | | | |
| 합 계 | | | 8,230 / 8,230 | | 151,886 |
|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990-40 | 잡종지 | 잡종지 | 5,108 / 5,108 | 19 | 97,563 |
|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990-73 | 잡종지 | 잡종지 | 3,122 / 3,122 | 17 | 54,323 |

• 매 수 자 : 상주시장

• 사 유 : 축산환경사업소 시설운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매각방법 : 수의매각

□ 총괄표

(단위 : ㎡, 천원)

| 구 분 | | | 건 수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취득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1 | 45,071 | 1,297,000 | |
| | 교 환 | 토지<br>건물<br>기타 | 1 | 45,071 | 1,297,000 | |
| 처분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2 | 24,123 | 1,448,886 | |
| | 교 환 | 토지<br>건물<br>기타 | 2 | 24,123 | 1,448,886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 | 추정가액(예정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및 방법 | 비고 |
|---|---|---|---|---|---|---|---|
| | 구분 | 소재지 | 수량(면적) | | | | |
| | | 1건 | 45,071 | 1,297,000 | | | |
| 1 | 토지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1558 일원 외 2곳 | • 토지연면적 45,071 | 1,297,000 | '20.9 | • 상주시유지와의 교환으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확보 | 해양수산과 (교환) |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 | 추정가액(예정가격) | 처분시기 | 처분사유 및 방법 | 비고 |
|---|---|---|---|---|---|---|---|
| | 구분 | 소재지 | 수량(면적) | | | | |
| | | 2건 | 24,123 | 1,448,886 | | | |
| 1 | 토지 | 상주시 화개동 71 | • 토지연면적 15,893 | 1,297,000 | '20.9 | • 상주시유지와의 교환으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확보 | 해양수산과 (교환) |
| 2 | 토지 |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990-40, 990-73 | • 토지연면적 8,230 | 151,886 | '20.9 | • 축산환경사업소 시설 운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지 확보 | 하천과 (매각)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강관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국책사업으로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강관 기술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 사 업 명 | 건 물 명 | 준 공 시 기 | 소 재 지 | 부지 | 건축 연면적 |
|---|---|---|---|---|---|
|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강관 기술센터 | '20. 6월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78 | 7,583㎡ | 2,725㎡ |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출연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 사 업 명 | 건 물 명 | 준 공 시 기 | 소 재 지 | 건 축 연면적 |
|---|---|---|---|---|
|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 '20. 10월 | 구미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 2,995 ㎡ |

□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출연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 사 업 명 | 건 물 명 | 준 공<br>시 기 | 소 재 지 | 건 축<br>연면적 |
|---|---|---|---|---|
|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탄소복합<br>설계해석<br>기술지원센터 | '20.<br>12월 | 경산시<br>4일반산업단지 | 2,509<br>㎡ |

□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용료 감면

• 목 적 : 2020년 2월 수탁기관인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사용기관 :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위탁종료시(2023. 1월)

※재위탁시 기간 연장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 사 업 명 | 건 물 명 | 이 전<br>시 기 | 소 재 지 | 부 지 | 건 축<br>연면적 |
|---|---|---|---|---|---|
| 경북북부<br>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이전 | 경북북부<br>아동보호<br>전문기관 | '20.<br>8월 | 안동시 신안동<br>290-3 | 320.96㎡ | 555.3㎡ |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교량설치 등)소재 사용료 감면

• 목 적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역

• 사용기관 :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로부터 5년간(※ 갱신 가능)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 토지소재지 | 지 목 | | 전체지적/<br>매각(용도폐지)<br>지적(㎡) | 공시지가<br>(천원) | 대장<br>가격<br>(천원) |
|---|---|---|---|---|---|
| | 공부 | 현황 | | | |
| 합 계 | | | 481 / 481 | | 15,825 |
| 포항시 북구 흥해읍<br>남송리 972-9 | 답 | 잡종지 | 240 / 240 | 33 | 7,896 |
| 포항시 북구 흥해읍<br>남송리 972-20 | 답 | 잡종지 | 241 / 241 | 33 | 7,929 |

## 결 의 안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춘우 의원('20. 9. 8)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9월 8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제안이유

○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20. 10. 6.(화) 13:40(1차 본회의)

• 2020. 10. 16.(금) 11:00(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18회 임시회)

●

2020. 10. 인쇄 / 2020. 10.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